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01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원발의】

검토보고서



2024. 2.

기획재경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4. 2. 16.

기획재경위원회

1. 검토과정

- 안건명: 대구광역시달서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 발의자: 이영빈 의원 등 8명(권숙자, 남현주, 이진환, 박정환, 정순옥, 박종길, 서민우)
- 발의일자: 2024. 2. 2.(금)
- 회부일자: 2024. 2. 2.(금)
- 검토기간: 2024. 2. 2.(금) ~ 2. 8.(목)

2. 제안이유

- 통일교육지원법에 정하여진 사항을 규정하여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평화통일 역량을 강화하여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4조)
- 통일교육 지원계획 수립, 공공시설의 이용(안 제5조~제6조)
-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안 제7조)
- 재정지원 등, 포상, 통일교육의 반영(안 제8조~제10조)
- 시행규칙(안 제11조)

4. 참고사항(관계법령 등)

- 관계법령: 「통일교육 지원법」
- 비용추계서: 비대상
- 입법예고(2024. 2. 2. ~ 2. 13.)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구민의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을 확산하고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은
 - 평화통일교육 기본원칙, 지역적 특성에 맞는 통일교육 지원계획 수립 · 시행, 효율적인 통일교육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통일교육 실시 기관 · 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 공무원 · 주민 등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 반영 등에 대하여 규정 하였음.
-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여부 등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별다른 이견이 없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 계 법령】

□ 「통일교육 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일교육” 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지역통일교육센터”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고, 통일교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의3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통일관”이란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자료 전시나 체험 등을 통하여 북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국민의 통일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제6조의4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통일교육을 국내와 국외, 학교와 학교 밖에서 모두 장려하여야 한다.

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기본원칙 · 추진목표와 방향
 2.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 · 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통일교육에 관한 국민의식 제고
 4. 통일교육실태의 조사 · 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
 5.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 지원에 관한 사항
 6. 「초 · 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원에 대한 통일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
 7. 통일교육 관련 교재의 개발 · 보급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통일교육 기관 및 단체의 육성 · 지원에 관한 사항
 9. 통일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 · 관리에 관한 사항
 10. 통일문제 및 통일교육에 관한 연구의 진흥에 관한 사항
 11. 통일교육 협력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의3(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 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 단체 또는 시설(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을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의 장은 그 지정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2.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④ 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을 위반하여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3.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⑤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4(통일관의 지정 등) ① 통일부장관은 국민에게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일관을 설치·운영하거나 북한 및 통일에 관한 교육·체험활동을 하는 시설을 통일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일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시설의 장은 시설, 예산, 인력, 교육운영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일관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하 “통일관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관의 지정신청 및 변경통보의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5(통일관에 관한 시정명령) 통일부장관은 통일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통일관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2.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운영의지를 명백히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의6(통일관의 지정취소 등)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일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일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조의5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일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조의7(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재를 개발·보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교육의 방법 및 실시기 등 통일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통일교육의 반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